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 | |
|-------|------------|
| 제안연월일 | 2023. 6. . |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안연월일: 2023. 6.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구미시의회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규칙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투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표결 방법 및 투표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결 결과 선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4조

구미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표결방법이 전자투표로 결정될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표결 및 투표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표결방법) ①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은 본회의장에 설치된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한다.

② 전자투표의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

③ 표결은 의장의 표결 선포로 시작되며, 기기의 재석 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른다. 이 경우 투표(찬성, 반대, 기권) 시간은 30초 이내로 한다.

④ 투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최종 결과로 처리되며 찬성, 반대, 기권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⑤ 표결의 종료는 의장의 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의원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한 경우,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조(표결 결과 선포) 표결이 종료되면 의장은 표결 결과를 선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